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9. 16(금) 10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0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II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III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○ 관련서류 : 2021회계연도 결산서(안)

IV.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

1. 일반회계 결산 총괄

가.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| 구분 | 예산현액 | 징수결정액(A) | 세입결산액(B) | 징수율 (B/A)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| 6,600,671,000 | 7,478,008,780 | 6,795,565,250 | 90.8% |
| 교통행정과 | 2,466,945,000 | 3,088,504,580 | 2,428,459,290 | 78.6% |
| 건설행정과 | 1,824,226,000 | 2,078,560,230 | 2,056,161,990 | 98.9% |
| 도 로 과 | 1,989,500,000 | 1,990,943,970 | 1,990,943,970 | 100% |
| 치 수 과 | 320,000,000 | 320,000,000 | 320,000,000 | 100% |

나. 세출 총괄

(단위:원)

| 부 서 명 | 예 산 현 액(A) | 지 출 액(B) | 다음연도 이 월 액 | 집 행 잔 액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금 액 | 집행률 (B/A) |
| 계 | 24,264,043,890 | 20,599,474,090 | 3,162,581,621 | 483,398,674 | 84.8% |
| 교통행정과 | 1,592,273,000 | 1,512,509,260 | | 74,914,620 | 94.9% |
| 건설행정과 | 4,836,257,000 | 3,726,103,440 | 1,084,011,000 | 26,142,560 | 77% |
| 도 로 과 | 13,808,132,320 | 11,448,038,630 | 2,078,570,621 | 276,684,854 | 82.9% |
| 치 수 과 | 4,027,381,570 | 3,912,822,760 | | 105,656,640 | 97.1% |

다. 집행잔액

(단위 : 원)

| 부서명 | 예산현액 | 집행잔액 | 사유별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| 보조금 정산잔액 | 예산절감액 |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|
| | | | 낙찰차액 | 지출잔액 | 예비비 |
| 계 | 24,264,043,890 | 483,398,674 | 553,785 | | 35,928,120 |
| | | | 164,573,739 | 282,343,030 | |
| 교통행정과 | 1,592,273,000 | 74,914,620 | | | 6,243,000 |
| | | | 12,992,140 | 55,679,480 | |
| 건설행정과 | 4,836,257,000 | 26,142,560 | 551,980 | | |
| | | | | 25,590,580 | |
| 도로과 | 13,808,132,320 | 276,684,854 | 995 | | |
| | | | 151,482,599 | 125,201,260 | |
| 치수과 | 4,027,381,570 | 105,656,640 | 810 | | 29,685,120 |
| | | | 99,000 | 75,871,710 | |

라. 교통건설국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원)

| 부서명 | 세부사업명 | 예산액㉠ | 지출액㉡ | 이월액㉢ | 집행잔액 ㉠-㉡-㉢ | 집행률 (㉡/㉠)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차관리과 | 다세대주택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주차 커뮤니티 운영 | 50,000,000 | 9,200,000 | | | 18.40% |
| | 공영주차장관련 시설물 관리 | 630,500,000 | 116,100,600 | 500,000,000 | 14,399,400 | 18.41% |
| | 공영주차장 건설 | 5,149,737,320 | 2,214,312,800 | 195,228,700 | 2,740,195,820 | 43.00% |
| | Green Parking 조성 | 157,734,000 | 73,595,850 | | 36,127,140 | 46.66% |
| | 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 | 29,400,000 | 15,531,050 | | 13,868,950 | 52.83% |
| |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| 74,355,000 | 47,107,950 | | 27,247,050 | 63.36% |

| 부 서 명 | 세부사업명 | 예산액(가) | 지출액(나) | 이월액(다) | 집행잔액 (가-나+다) | 집행률 (나/가)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건설행정과 | 국·공유 행정재산 관리 | 13,188,000 | 9,132,800 | | 4,055,200 | 69.25% |
| 도로과 | 급경사지 개선공사 | 200,000,000 | 0 | 200,000,000 | 0 | 0.00% |
| | 보안등 노후 점멸기 교체 | 120,000,000 | 0 | 120,000,000 | 0 | 0.00% |
| | 신속한 제설대책 | 3,293,417,000 | 1,995,489,810 | 1,156,554,021 | 140,520,749 | 60.59% |
| 치수과 | 풍수해 대책 | 79,103,000 | 46,877,430 | | 32,225,570 | 59.26% |
| | 인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| 15,000,000 | 10,342,910 | | 4,657,090 | 68.95% |

※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(집행률 70% 미만 사업)

2. 예산의 전용

○ 예산전용 현황 : 해당사항 없음.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계 | | 명시이월 | | 사고이월 | |
|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| 건수 | 금 액 | 건수 | 금 액 | 건수 | 금 액 |
| 계 | 10 | 3,162,581 | 5 | 2,908,723 | 5 | 253,858 |
| 교통행정과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건설행정과 | 1 | 1,084,011 | 1 | 1,084,011 | - | - |
| 도로과 | 9 | 2,078,570 | 4 | 1,824,712 | 5 | 253,858 |
| 치수과 | - | - | - | - | - | - |

가. 명시 이월사업비 현황 : 5건

(단위:천원)

| 부서명 | 세 부 사 업 | 통계목 | 예산현액 | 원인행위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이 월 사 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건 설 행정과 | 독산로 지중화 사업 | 시설비 | 4,536,252 | 3,452,240 | 1,084,011 | 실시설계 지연 및 가로수 수종변경 사업과의 병행 추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 일정 지연 |
| 도로과 |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| 시설비 | 3,268,862 | 2,727,148 | 541,712 | [연도 내 지출 불가] 현 시점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진행중으로, 이의재결에 따른 감정평가 시행으로 보상금 미확정 |
| | 급경사지 개선공사 | 시설비 | 200,000 | | 200,000 | [집행시기 미도래] '21. 12. 27.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발주 및 계약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 |
| | 신속한 제설대책 | 시설비 | 2,621,700 | 1,726,834 | 963,000 | [집행시기 미도래] 겨울철 동절기 공사시 시설물 품질저하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이월하고자 함. |
| | 보안등 노후 점멸기 교체 | 시설비 | 120,000 | | 120,000 | [집행시기 미도래] '21. 12. 27.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발주 및 계약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 |

○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: 5건

(단위:천원)

| 부서명 | 세 부 사 업 | 통계목 | 예산현액 | 원인행위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이 월 사 유 |
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
| 도로과 | 관내 도로보수 | 시설비 | 2,941,353 | 2,939,790 | 60,304 |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긴급보수 등에 대비 |
| | 신속한 제설대책 | 공공운영비 | 59,066 | 47,716 | 6,000 | '22.3월까지 강설에 대비하기 위해 사고이월 |
| | 신속한 제설대책 | 재료비 | 135,971 | 135,899 | 6,000 | 제설대책기간이 2021.11.15.-2022.3.15.로 회계연도내 사업종료가 불가 |
| | 신속한 제설대책 | 시설비 | 2,621,700 | 1,726,834 | 156,844 | 준공기한 미도래 |
| | 신속한 제설대책 | 감리비 | 38,000 | 31,940 | 24,710 | 겨울철 공사 지연 |

4. 기금 결산

(단위: 원)

| 구분 | 전년도말 조성액(A) | 당해연도증감액 | | | 당해연도말 조성액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계(B=C-D) | 조성액(C) | 사용액(D) | |
| 계 | 2,916,326,400 | 62,300,230 | 2,244,026,975 | 1,538,786,460 | 3,621,566,915 |
| 옥외광고발전기금 | 1,242,391,690 | △104,563,730 | 137,895,230 | 242,448,960 | 1,137,837,960 |
| 도로굴착복구기금 | 1,673,934,710 | 809,794,245 | 2,106,131,745 | 1,296,337,500 | 2,483,728,955 |

5.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가. 세입결산

(단위: 원)

| 구분 | 예산현액 | 징수결정액(A) | 세입결산액(B) | 징수율 (B/A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| 11,582,804,320 | 18,612,625,783 | 10,960,628,613 | 58.8% |
| 세외수입 | 5,235,040,000 | 12,842,959,950 | 5,190,962,780 | 40.4% |
| 조정교부금 | 532,000,000 | | | |
| 보조금 | 1,005,567,000 | 959,467,000 | 959,467,000 | 100% |
| 보전수입등 맞내부거래 | 4,810,197,320 | 4,810,198,833 | 4,810,198,833 | 100% |

나. 세출결산

(단위: 원)

| 부서명 | 예산현액(A) | 지출액(B) | 다음연도 이월액 | 집행잔액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금액 | 집행률 (B/A) |
| 주차관리과 | 11,582,804,320 | 7,085,890,200 | 695,228,700 | 3,712,874,410 | 61.1 |

다. 예산의 전용

(단위: 천원)

| 구분 | 부서별 | 건수 | 금 액 | 사유 |
|----|-------|----|-----|---|
| 계 | | 1 | 600 | |
| 전용 | 주차관리과 | 1 | 600 | -거주자 우선주차 민원 처리를 위한 휴대폰 구입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|

라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계 | | 명시이월 | | 사고이월 | |
|-------|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| 건수 | 금 액 | 건수 | 금 액 | 건수 | 금 액 |
| 계 | 2 | 695,228 | 1 | 500,000 | 1 | 195,228 |
| 주차관리과 | 2 | 695,228 | 1 | 500,000 | 1 | 195,228 |

○ 명시 이월사업비 현황 : 1건

(단위:천원)

| 부서명 | 세 부 사 업 | 통계목 | 예산현액 | 원 인 행위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이 월 사 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|
| 주 차 관리과 | 공영주차장 관련시설물 관리 | 시설비 | 628,700 | 115,260 | 500,000 | [집행시기 미도래] '21. 11.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하고, '22. 5. 집행 및 준공 예정 |

○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: 1건

(단위:천원)

| 부서명 | 세 부 사 업 | 통계목 | 예산현액 | 원 인 행위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이 월 사 유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주 차 관리과 | 공영주차장 건설 | 시설비 | 5,127,888 | 2,395,839 | 195,228 | 기존 건축물 해체 신고 사전절차 이행절차 수행 및 절대공기 부족 |

VI. 검토의견

1. 일반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- 2021회계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7억 9,550만원으로 징수를 90.8%이며
- 일반회계 지출액은 205억 9,940만원으로,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.8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6,258만원이며, 집행잔액은 4억 8,339만원임.

2. 예산의 전용 : 해당사항 없음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- 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에 따른 교통건설국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
 - 명시이월은 총 5건 29억 87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 - 사고이월은 총 5건 2억 5,3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4. 기금 결산

-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,
 -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1,632만원이며
 - 당해연도 사용액은 15억 3,878만원으로
 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억 2,156만원임.

5.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-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

- 예산 현액은 115억 8,280만원이고
- 징수 결정액은 186억 1,260만원이며
- 수납액은 109억 6,062만원임.
-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58.8%이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40.5%이며
적극적인 징수대책의 노력이 요구됨
-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15억 8,280만원이며, 지출액 70억 8,589만원이며
집행잔액은 37억 1,287만원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 규정에 따른 주차관리과 예산전용은
총 1건 60만원을 전용하였음.
-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,
 - 명시이월은 총 1건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 - 사고이월은 총 1건 1억 9,5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6. 검토 의견

-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검토 결과,
예산 대비 집행률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, 매년 반복
집행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, 사업 효과를
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되풀이
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

-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4.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 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타법개정]

-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☞ 기금 관련 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

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